

독일판례 3

게재를 함에 있어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이 빠진 경우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1985. 1. 16 판결
-15U220/84 사건-

<적용법조>

노르트라인-웨스트팔렌주 언론법 제 11 조

<판결요지>

독자의 편지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에 있어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이 빠진 경우에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새로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사실개요>

당사자들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함에 있어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이 빠져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새로이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본건에 있어서 정정보도의 요구는 피신청인이 발간하는 간행물에 게재된 독자의 편지에 관한 것이다. 신청을 기각하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신청인의 항소가 제기되었다.

<판결이유>

신청인의 항소는 적법하기는 하지만 그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이 빠지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점에 있어서는 그의 정정보도요청에 부합하였고 신청인이 예비적으로 요청한, 문제의 사건을 지칭하는 표제와 함께 인쇄되었던 그의 정정보도문을 위 주 언론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넣어서 다시 게재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청인은 본건과 같이 (독자의 편지에 대한 정정보도) 특수한 경우에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의 게재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지방법원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편집기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삭제한 것은 정정보도 청구권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인 무기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독자의 눈길을 끌고 위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표제가 없게 되면 독자들이 그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그리고 그에 별로 관심이 없는 보통의 기사인 것으로 여기고, 또는 그 정정보도문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보통의 독자편지와 같이 보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Seitz/schmidt/schoner, Der Gegendarstellungs anspruch in Presse, Film Funk und Fernsehen, Rdnr. 223). 이와 같은 이유에 기하여-본건에 있어서와 같이-원래의 기사가 「우리들 독자의 의견」이라는 난에 게재되어 있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정보도문도 역시 위 주언론법 제 11 조 제 3 항 제 1 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난에 게재되어야 하고 또한 게재된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에 의하여 정정보도문을 특히 눈에 띄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난에는 개개의 독자들이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각자의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그 잡지의 독자들에게는 원래부터 분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의 편지는 그 내용이 명백하고 조리가 있는 경우에만 그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독자의 편지는 많은 독자들이 신문의 편집인들에 대하여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편지 난에 게재된 내용은 비록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독자의 편지에 포함된 내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잡지의 독자와의 이와 같은 분쟁에 있어서는 무기대등의 원칙의 관점 하에서 잡지의 독자들을 위하여 원래의 독자의 편지(여기에서는 H 씨)와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여기에서는 신청인)과의 관련을 맺어줄 수 있는 적절한 제목을 게재해 줌으로써 족한 것이다(위 Seitz/Schmidt/Schoner 참조). 그런데 피신청인의 게재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즉 주된 제목에서는 난방비용공제에 관한 쌍방 당사자의 쟁점이 분명히 나타나 있었고, 「단지 차액만이 유보되고 있다」라고 작은 글씨로 인쇄된(7 월 14 일자

24 호) 부제목에서는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첫 번째의 편지가 명백히 표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정정보도문은 삭제됨이 없이 게재되어야 한다는 위 법 제 11 조 제 3 항 제 1 문에 위배되었으므로 이러한 특별한 근거에 기하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법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미 한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적합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언론법 제 11 조 제 3 항 제 1 문의 변경금지의 규정은 원래의 정정보도문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이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은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언론기관이 선택한 제목이 정정보도문인 본문의 표시로서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적법한 이행이 있었으므로, 재차의 게재를 청구할 수 없다는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견해 (in AfP 1977. 358)에 당원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게재청구의 주장은 (다른 모든 나라의 법률에 있어서와 같이) 신의 · 성실의 원칙 (BGB § 242)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위 제목의 삭제가 정정보도청구권 제도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한 이와 같이 재차의 게재청구는 권리의 남용으로 되는 것이다(Löffler, Presserecht, 3. Aufl., Rdnr. 153zu § 11 LPG 참조).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의 삭제로 인하여 위와 같은 본질적 변경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목의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H 씨의 독자편지에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되었고, 그리고 독자들이 신청인의 위 문장이 위 독자편지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